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552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4.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는 2002. 7. 3.경 B과 사이에 대출금액 3,600,000원, 약정이율 15.40%, 연체이율 19%, 대출만기일 2013. 7. 3. 등으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B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대출만기일에 위 대출약정에 의한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 등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17. 현재 대출원리금 잔액은 3,689,891원(원금잔액 2,450,000원, 대출이자 3,720,178원)이다.

다. B의 아버지 D은 2019. 4. 15.경 사망하였고, D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의 상속지분이 2/9임에도 불구하고 2019. 6. 13.경 원고 소송수계인의 어머니인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춘천지방법원 2020개회284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20. 10. 2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1. 4. 21.경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마. 이 법원은 B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으로 B을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위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권인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권인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이 법원의 속행명령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안태윤

별지